

건설산업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 기초연구

The Influence and Construction Strategies of Constructor under the PL Law in Construction Industry

김진호*

Kim, Jin-H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ational plans of Construction Policies under Product Liability Law.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Analytical survey of actual Influence under Product Liability Law in Construction Industry.
- 2) Review of Business Strategies of Constructor and Building Material Supplier.

Although real estate including apartment is excepted from the application of product liability law, constructor are not perfectly free to the product liability law. And the expectancies of this paper are that it can be used as efficient data for improvement of system to systematize contents of Product Liability Law in korea.

키워드 : 제조물책임법, 제조결합, 건설산업, 건설자재 공급업자

Keywords : Product Liability Law, Manufacturing Defect, Construction Industry, Building Material Supplier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조물책임법은 미국(62), 유럽연합(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7)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의 피해규제 원활화와 제품의 안전성 향상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러한 제조물책임법은 국제교역량의 확대로 제조물 책임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산업화에 따른 소비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및 민사책임제도에 의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곤란과 같은 요인에서도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건설산업에 있어서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으며, 그 개념조차 명확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설시장이 개방화되어 가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고찰함으로써, 제조물의 품질향상과 클레임 발생건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우선, 제조물의 정의 및 제조물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기초적인 이론을 고찰하였으며, 이것을 토대로 실태조사를 『면담기초조사』와 『설문조사』로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에 있어서 현장 품질관리의 문제점을 고찰한다는 관점에서 주요 조사내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으며, 공종별 제조물의 결함(하자)정보의 체계화를 위한 선행연구(기초연구)로서 수행되었다.

- 1) 제조물책임법의 성립요건
- 2) 제조물책임법 적용범위의 사례연구
- 3) 제조물책임법의 인식도와 건설산업에 미치는 과급범위
- 4) 제조물책임법 적용범위 확대의 타당성
- 5) 건설산업의 대응방안

2. 제조물책임법의 이론적인 고찰

2.1 제조물의 정의 및 제조물책임법의 성립요건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건설업계에 있어서 「제조물」은

*정회원, 동명정보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공학박사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하며, 토지나 건물을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건축과 관련된 창호, 승강기, 공조시설 등은 제조물로 정의되고 있다.

한편, 「제조업자」란 가공과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자이며, 외국의 건설자재를 수입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국내건설업자의 경우 이러한 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그럼¹¹⁾은 제조물책임법의 성립요건을 나타낸 것으로 제조회사의 과실은 정성적인 측면이 있어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결합”의 입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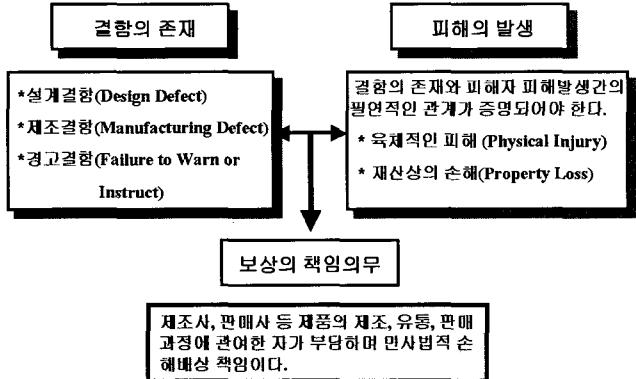


그림 1. 제조물 책임법의 성립요건

여기에서 결합이란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나 제조물이 인도된 시기 등,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가진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의미한다.

결합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

1) 설계결함(Design Defect)

위험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채택되지 않아 제품의 위험성이 증가된 경우에 인정된다.

2) 제조결함(Manufacturing Defect)

제조물이 제조사의 설계 및 사양과 상이하게 제조 또는 가공된 경우를 말한다.

3) 경고결함(Failure to Warn or Instruct)

제조사나 매도인이 제조물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적절한 지시나 경고를 하였으면 위험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제조물의 구입 또는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조자가 내재된 위험 잠재요인을 경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표¹²⁾은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의 체계를 비교한 것으로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점과 소명시효기간은 거의 같지만,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Defect)여부를 입증해

야 하는 반면, 민법은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점은 다소 상이하다.

표 1. 제조물책임법(PL법)과 민법체계의 비교

구 分	제조물책임법(PL법)	민 법
책임요건	-제조물의 결함 (무과실/엄격책임)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보증책임)
입증범위 (소비자)	-제조물의 결함여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소멸시효	-제조물 공급일로부터 10년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 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부터 3년

2.2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배경 및 적용범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PL이라고 한다.)』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제조사 등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요건인 “가해자 고의 과실” 즉 “과실책임”을 “제조자의 결함” 즉, “무과실 책임”으로 전환하는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1999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으로 확정되고 2000년 1월에 공표되어 2002년 7월에 시행되었다.

표²³⁾은 PL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간의 차이점을 비교·분석 한 것이다.

표 2. PL법 적용 국가별 차이의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PL책임 주체	제조 및 수입판매 업자	제조수입 판매업자	제조·수입 공급업자	제조· 수입업자
책임부담 조건	제품결함	제품결함	제품결함	제품결함
결합조건	통상적인 안전성 결여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상태	소비자기대 안전성의 미비	일반적인 안전성 미비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 및 가공된 동산	제마다 상이함	農·畜· 水產物 및 動產	동산(식품 등 未加工 농수산물 및 부동산 은 제외)
법적인 근거	PL법	통일법은 없음 (각주 판례 및 법률)	EU의 PL법	PL법
제품법정 책임기간	유통개시후 10년	유통개시후 10년 (주마다 상이함)	유통개시후 10년	유통개시후 10년
소송기한	3년	3년	3년	3년
소송의식	일본 보다 강함	소송선호	일반적인 소송선호	일반적으로 소극적
입증의무	원고	원고(소비자) -제조업자의 정보를 공시 할 의무가 있음	원고	원고 (단, 원인규명 전문기관 설치로 부담경감)

1) <http://www.interpl.org/>
2) <http://www.interpl.org/>

3) <http://www.interpl.org/>

PL법은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제조업자와 소비자의 지위가 양극화되어 소비자가 대량생산된 제조물의 안전성을 제조업자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제조물책임이 타당한 분야는 기본적으로 대량생산, 대량 소비되는 형태인 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⁴⁾ 표2에 기술한 것처럼 제조물의 범위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PL법은 제조물책임의 대상을 동산으로만 한정시켜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유럽연합(EU)과 우리 나라 보다 PL법을 일찍 도입한 일본도 건설공사로 인한 완성물인 부동산을 PL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부동산은 분쟁의 대부분이 계약당사자간의 목적물 자체의 성능에 관한 것으로 민법상의 계약책임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며, 제3자에 관한 피해는 토지공작물책임에 의하여 피해자보호가 가능하므로 PL법에서 제외되었다.

2) 농수축산물

가공되지 않은 농·수·축산물은 자연적인 요소로 인하여 성장하였으므로 농민이나 어민에게 PL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최근에는 인공적인 재배 기술이나 농약, 화학비료, 성장촉진제와 같은 인공첨가물을 사용빈도가 높아짐으로써 PL법으로의 포함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 부동산이 PL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소비자단체에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을 PL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1) 공동주택은 공급받는 자(매수인) 개인이 다양한 결함을 증명하기 곤란하다.

(2) 민법상의 하자보수책임은 전물의 물리적인 하자보수에 비중이 있으며, 매수인의 정신적인 측면까지의 보상은 충분하지 못하다.

(3) 분양주택도 하나의 브랜드상품으로 인식되고 있고, 인 간에 의해 가공된 “제조물” 이므로 제조결함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실태조사의 분석 및 고찰

본 연구에 있어서 실태조사는 국내건설업체 도급순위 1위~50위(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 참고.)업체 중,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우선, 기초면담조사는 현장방문 및 E-mail을 이용하여 문답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는 업체 당 5부씩 총 150부를 배부하여 119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은 79%).

한편, 설문지는 건설업체 당 본사에 2부를 배부하였으며, 현장에는 현장소장과 공무과장 및 자재담당자에 배부하였다.

4) 권영복,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결함”, 안동대논문집, 1984.

그림2는 기초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대상의 현장경력년수를 나타낸 것으로 6년에서 13년까지가 전체 중 67%정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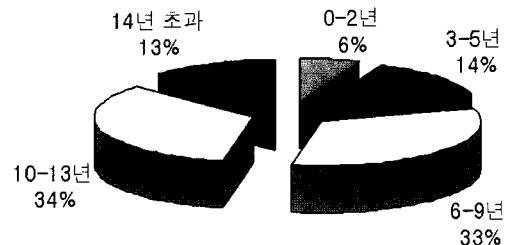


그림 2. 조사대상자 현장경력년수의 분포

3.1 기초면담조사의 분석과 고찰

표3은 면담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PL법 적용의 사례를 일부 나타낸 것이다.

표 3. 면담조사에 의한 PL법 적용 사례

구 분	내 용	해결방안
도어설계 및 제조 결합	*도어(Door)의 설계 상 또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구입자가 손해를 본 경우 1) 도어의 제조회사는 PL법상 책임이 인정됨 ▶ 도어는 제조물로 간주 2) 도어설치서 미비로 도어설치불량을 초래, 천재지변(지진 등)에 의해 도어작동이 곤란한 경우, 제조회사는 PL법상 책임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해야함	1) 설계 및 시공측면에서 품질관리의 철저로 결함예방 2) 도어설치서 확인
지반연약 부동침하	*연약지반에 의한 부동침하로 가옥 일부 파손된 경우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고 2) 예측된 지반침하의 대책강구 소홀함 ▶ 부지가 눈이었으므로 기초공사의 보강이 필요했음 3) 가옥 및 가재도구 손해발생에 따른 재무불이행에 대한 과실이 인정됨 4) 안전성이 결여된 부지이지만 부동산인 토지(부지)는 PL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PL법에 따른 책임문제 곤란 5) 부지결함(하자) 분양주택의 판매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됨	1) 토지 부동침하에 대한 지반강도의 확보 2) 조성부지의 결함 예방
택지옹벽 붕괴사고	*택지옹벽이 호우로 붕괴되어 가옥을 파손한 경우 1) 가옥파손은 택지옹벽의 안전성 결여 때문이지만, 부동산인 택지는 PL법상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PL법상의 책임은 없음 2) 건설회사는 부지에 결함(하자)가 있는 분양주택을 판매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은 지게 됨	1) 지반조사 철저 및 설계상 충분한 강도의 확보 2) 택지조성 및 옹벽 시공시, 설계대로 사공되는가 검토 3) 설계상의 오류의 검토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면담조사에 의해 파악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결합의 원인과 주체는 건설회사의 불법행위와 토지공작물에 대한 책임으로 나타나 있지만, 부동산(토지, 부지, 택지 등)은 PL법상 제조물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그러나, 도어(Door)나 창호의 경우는 현행 PL법상 제조물로 간주되므로 도어설치 매뉴얼(Manual)의 미비로 인해 도어설치 때 결함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작동곤란을 초래하였다면 PL법상 결함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3) 즉, 국내의 경우는 “제조물”의 범위로 “가공된 동산”은 포함되고 인공적으로 “가공된 부동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표2에 나타난 것처럼 국외의 사례에서도 많이 볼 수는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제조물을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식품 등의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은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발효나 조리 등의 가공된 농·수산물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인공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제1차 농수축산물”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므로 제조물로 볼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적인 기후에 의해 발육된 것은 농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4) 결국, 논점은 건축물에 대한 PL법상 논리의 해석인데 소비자 보호단체는 인공적으로 가공된 물건은 PL법상 제조물로 간주하여 건축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반 제조업이 일괄생산방식으로 판매되는 것에 반해, 건설생산 프로세스는 분절된 생산단계별로 책임자가 상이하고 공사의 일부는 분할발주로 시행되므로 제조업과 동일한 관점에서 제조물을 정의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내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건설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3.2에서 설문조사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건설업계의 대응전략의 방향성을 검토해 보았다.

3.2. 설문조사의 분석과 고찰

여기에서는 현장 및 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면담조사의 결과분석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배부하였으며,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답변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PL법의 인식과 영향

그림3은 건설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이후의 문제점을 나타낸 것으로 “자재검수 및 기록” 업무가 45%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재검수는 현장기사 중 경력 년수가 비교적 적은 기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업무상 개략적인 수량 및 단가의 확인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PL법에 있어서 제조물의 범위에 건설자재가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확인작업이 실시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추후 발생하는 결함에 대한 책임소재의 규명이 매우 곤란하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림4는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PL법에 대한 인지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같이 “PL법의 목적정도만 알고 내용은 전혀 모른다”가 전체 중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PL법을 잘 숙지하고 있다”는 3%정도에 그쳤고

“전혀 몰랐다”도 23%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의 요인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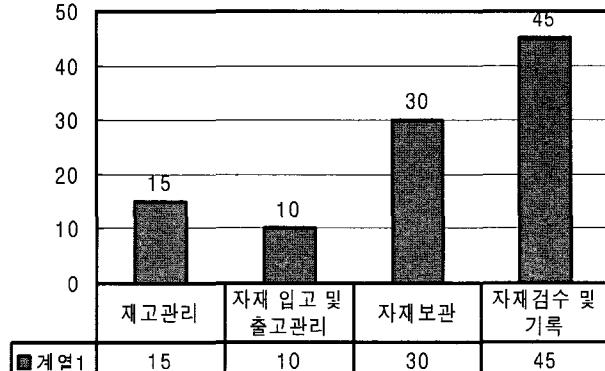


그림 3. 건설자재 현장반입 후의 문제점(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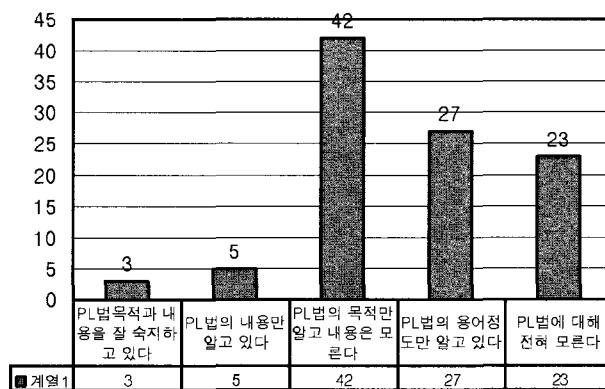


그림 4. PL법의 인식도(단위: %)

(1) 현재 건설업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결합(하자)하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법체계로도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법체계를 이중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어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실제로 민법에도 매매 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매도인 등 인도자(引渡者)자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에 따른 매수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기타 다른 법령으로 대체하여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림5는 PL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품질향상에 다소 도움은 된다”가 5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품질향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것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PL법이 건설업에 적용되면 클레임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보는 견해가 20%를 차지했는데 현행 PL법상 제조물의 범위에 부동산인 건축물을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건설자재업과 설비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laim발생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의견이 많이 도출되었다. 즉, 건설공사 현장은 설계자-시공자(하도급업자 포함)-건설자재업자-설비업자 등이 상호 연관되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건축물이 완성된다. 예를 들면, 현장에 자재를 반입하여 재가공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러한 점은 PL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PL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의 범주 속에 건축물 전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은 적용을 받으므로 제조물로 규정된 자재는 자재공급업자(Material Supplier) 뿐만 아니라 시공자도 재가공(再加工)을 하므로 결합발생 시, 원인의 규명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즉, 분쟁의 소재가 상당부분 잠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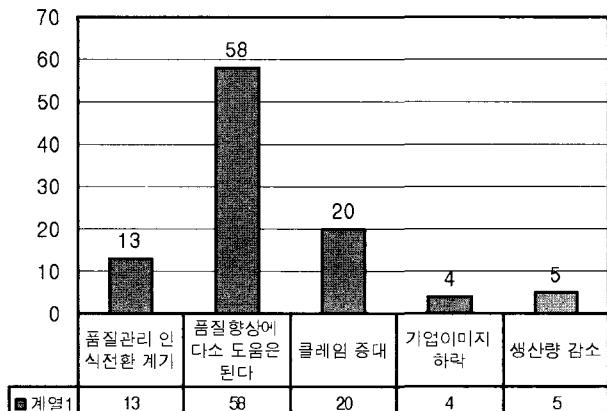


그림 5. PL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단위: %)

미국의 경우,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을 “PL법의 적용에 따른 대응”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많으며 주된 이유로는 생산중지, 판매감소, 기업 이미지실추 등이다.

미국 캠벨법률사무소 분석에 의하면, 미국기업의 PL관련비용(손해배상금, 보험료 등)이 년 3500억불이 초과되었는데 이것은 미국GNP의 7%에 해당한다.

그림6은 PL법 시행에 따른 건축공사 공종별로 미치는 파급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설비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RC공사나 내장공사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면담조사의 결과 및 설문지분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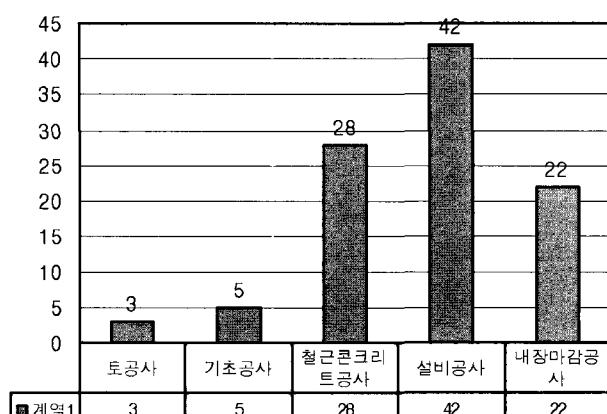


그림 6. PL법 적용 시 공종별 영향도(단위: %)

(1) 현행 건축분야에 PL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있어서 건설자재업과 설비업이 포함되고 있으며, 설비부품은 쾌적한 거주의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큰 비중을 둔다.

(2) RC공사나 내장마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중 50%을

차지하는 것은 골조(구체)의 결함인 균열이나 누수는 건물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내장마감재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방수의 하자인 누수는 그 자체가 하자일뿐만 아니라, 내장마감재의 성능저하 등을 초래하므로 다른 유형의 결함을 발생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2) PL법 적용확대 타당성 및 대응방안

여기에서는 전술한 PL법의 건설산업으로의 영향을 토대로 하여 PL법의 확대적용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림7은 건설업에 있어서 제조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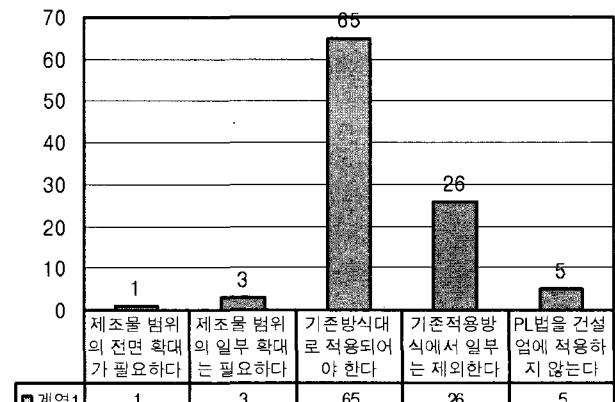


그림 7. 건설업에 있어서 PL법상 제조물범위 확대 필요성(%)

그림과 같이 “기준방식대로 적용”이 전체 중 6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확대”는 1%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PL법을 건설업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요인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1) 기준방식대로만 적용되는 경우는 종전대로 PL법상 “제조물”의 범위에 부동산인 건축물(공동주택 등)은 포함시키지 않고, 건설자재와 설비만 포함시키는 것을 유지하자는 것인데 민법의 적용만으로도 주택공급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큰 문제가 없고 PL법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만 입법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사안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2) 즉, 건축물은 인공적인 가공물을 틀림없지만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관리조직은 다변화되어 있으므로 계약관계가 복잡하고 분할빌주방식에 의해 현장에 투입되어 직종이 다양하므로 작업의 종류가 매우 많아 결합(하자)에 대한 책임규명은 매우 어렵다.

반면, 제조업은 제조물의 기획, 설계, 생산, 판매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져 제조자의 규명이 용이하므로 책임소재의 파악이 건설업보다는 용이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설업과 제조업의 생산방식을 동일하게 정의할 수 없으므로 완성된 건축물은 PL법상 “제조물”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림8은 PL법의 시행에 따라 신속히 해결되어야 할 대응전략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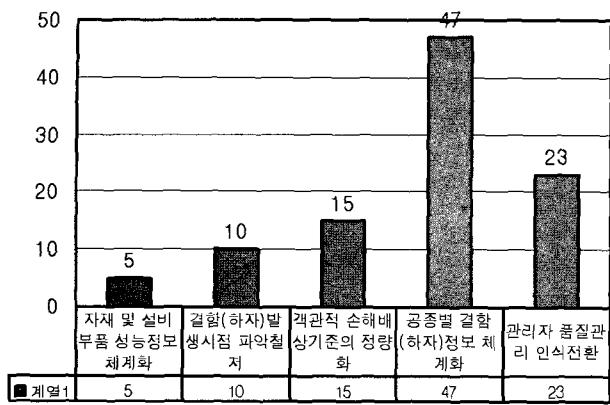


그림 8. PL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단위:%)

“공종별 하자정보의 체계화”가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품질향상 의식의 고양이 23%로 나타났는데 공종별로 하자발생정보를 Database화하여 체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건설사의 과실은 정성적인 측면이 있어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피해보상이 적절하지 못하므로 객관적인 손해배상 기준의 정량적인 산정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림9는 자재정보의 합리적인 방법을 나타낸 것인데 ADSL과 같은 초고속 전산망을 구축하여 실시간(Real Time)으로 정보검색이 가능하고 정보를 공유화 하여 발주정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4. 조사내용의 종합고찰 및 대응방안

4.1 실태조사로부터 도출된 시사점

건설업의 경우 PL법 상 제조물의 범위에 부동산인 공동집합주택은 우리나라를 포함 일본 및 PL법을 적용하고 있는 각국에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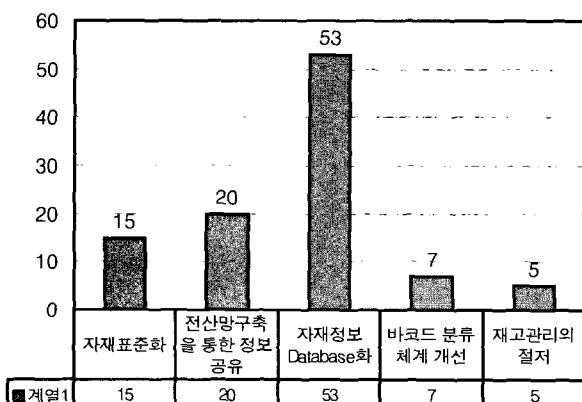


그림 9. 자재정보관리 효율적 방안(단위: %)

그러나, 아파트 미닫이문이 무너져 부상을 당한 경우, 문을

제조한 건설 자재업자에게는 PL법상 과실이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건설자재 및 설비기기 등은 PL법상 제조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창호나 도어(Door)의 경우는 가공된 동산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점은 시공 이후라 하더라도 건설업자와 건설자재업자는 사전에 상호간 계약이 존재하였으므로 업무수행 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건설업자에까지도 PL법의 구속력이 미칠 수도 있어 시급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아직 “가공된 부동산”에 대한 정의 및 법적인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있지만, 민법의 조항만으로는 매수인의 권리보호가 곤란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부동산도 PL법 상 제조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 시공회사들은 PL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야 하며 전술한 기조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측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검토해 나가야 한다.

(1) PL법 시행 및 적용범위의 확대에 대비하여 사전적인 대응방법과 사후적인 대응방법으로 이원화(二元化)하여 건설정책을 수립한다.

(2) 건설업자(일반 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업자)와 자재공급업자(Material Supplier) 및 설비업자간 계약체계를 재검토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

(3) 건축물 매수인의 클레임제기에 대비하여 공인 품질인증마크를 취득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4) 제조물 및 제품 인도시, 사용방법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5) PL소송의 집단적인 민원제기에 대비하여 PL위험판리방법론을 검토한다.

4.2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여기에서는 전술한 실태조사의 분석내용과 4.1에서 이슈화한 내용을 토대로, 건설업의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기술하였으며, 그림10은 PL법 시행에 따른 건설업의 대응방안을 나타내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PL사고가 발생한다면 건설자재 공급업자(이하 전재라고 한다.)와 설비업자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수도 있으므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PL보험에 가입한다.

2) ISO 9000 인증마크를 취득하면 자사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PL사고 시에도 제조물 품질에 대한 오해를 잠식시킬 수 있다.

3) 건설 프로젝트는 복잡한 계약에 의해 계층화된 조직구조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특수성이 있으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므로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의 파악이 곤란하다. 따라서, 각 주체(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는 책임소재에 대해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품납품 하도급업체는 제품의 위탁제조에 있어서 원도급자의 작업지시가 존재한 경우, PL사고는 도급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해 두며, 건설업체는 자재·설비공급업체와 계약 시, PL책임을 사전에 명시하고, PL보험가입을 조건으로 계약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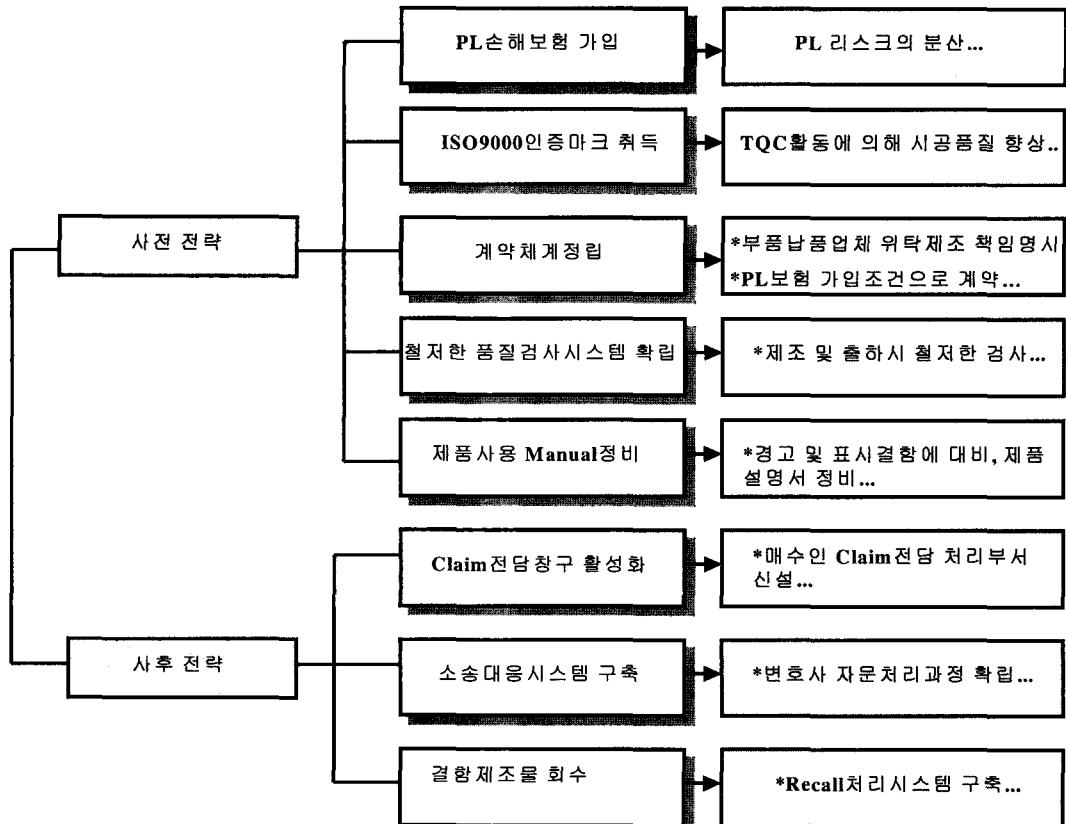


그림 10. PL법 시행에 따른 건설업계의 대응전략

특히, 우리 나라는 공공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이 적용되고 있지만, 손해배상책임규정에서는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하고, 발주자 우위의 규정이 많으므로 공공 공사의 계약조건을 개선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해 두어야 한다.

- 4) 건설기계나 EV의 경우는 사용도중에 보수정비가 미흡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PL소송이 발생하면 제조업자는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제조 및 출하과정에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둔다.
- 5) 경고결함(Failure to Warn or Instruct)에 의한 PL사고가 발생하자 않도록 제품설명서(Manual)을 재정비하여 위험성을 명확하게 표시해 둔다.
- 6) 매수인(입주자)이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신속한 처리 및 전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클레임전담 창구를 개설해 둔다.
- 7) PL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얻기 위해 변호사 인력Pool을 사전에 구성해 둈다.
- 8) PL사고가 발생한 경우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는 리콜(Recall)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둔다.

5. 결 론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PL법 적용실태를 파악하여 건설공사 공종별로 결함(하자)의 원인을 분석한 이후 하자정보를 체계화하기 위한 선행연구(기초연구)로서, 기초면담조사와 설문

지 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제조물을 제조하여 결함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공이나 수입 및 표시 등을 직접 시행한 것이 요건이 된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설치공사만 시행했다면 민법상의 책임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인공적인 “가공”을 한 경우는 건설업자는 “제조자”로 간주되어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가공을 지시한 경우도 제조자로 인정되지만, 현행 PL법은 부동산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부동산을 구성하는 건설자재나 서비스는 PL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 2) 일반 제조업은 “기획-개발-설계-생산-판매”의 프로세스가 일괄방식이므로 제조자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데 반해, 건설업의 경우는 생산단계에서 발주자와 설계자 및 시공자, 구조기술자, 감리자, 설비공사업자, 하도급업자, 자재공급업자(Material Supplier) 간, 다변화된 계약방식이 존재하며 일반 제조업과 같이 동일한 생산조직 내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시공조직도 생산조직의 일원으로서 존재할 뿐 설계자나 설비업자, 자재공급업자 등, 타조직의 생선행위를 통제할 위치에 있지도 않으며 권한도 없다. 즉, 단순히 계약에 의해 상호 협력 하에 건축생산 활동에 참가하고 있을 뿐이다.
- 3) 일반 제조물과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가공하고 생산함으로써 소비자가 공급받았을 경우,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PL법에 의해 저촉이 되지만 분양건축물이나 공동집합주택은 시공자나 감리자에 의해 생산되고 관공서의 심의를 거쳐 완성

되므로 공사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다양화되어 있다. 따라서, 결함이 발생하여도 원인의 규명이 곤란하여 손해배상기준의 결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PL법에 있어서 부동산인 건축물은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건축물은 설계자·시공자·감리자·하도급자·건설 자재업자·건설 설비업자 등이 상호간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므로 부동산인 공동주택 등의 건축 제조물이 PL법상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PL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전 세계의 PL법 중 가장 엄격한 경향을 띠고 있어 미국내의 수많은 기업체들이 PL소송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건축물의 결함에 대해 하자보수반을 가동하여 보수를 하면 된다라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탈피하여 입주자가 다양한 클레임(Claim)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고, 전담창구의 개설이나 PL법보험 등에 가입하여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

5) 본 연구에서는 PL법 시행 및 적용범위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사전”과 “사후”로 이원화(二元化)하여 8단계로 제시하고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기술하였다.

참 고 문 헌

1. 이윤권,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입법론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2. 하종선 외 1인,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신문사, 1997.
3. 권영복,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결함, 안동대논문집, 1984.
4. 배대권, ISO9000규격, 기문당, 2000.
5. 송재희, 제조물책임법과 기업의 대응전략, 성안당, 2002.
6. 한국표준협회, 제조물책임법대책 특별세미나 강연집, 1997
7. いま日本の住宅が危ない, 일본변호사연합회 소비자문제대책 위원회, 1996.
8. 국회사무처, 제조물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국내 입법 방향, 법제현안 제99-4호(통권 제89호);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9.
9. 김민중,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 저스티스 제243권 제2호, 한국법학원, 1991.
10. Sam Brown, The Product Liability Handbook, Van Nostrand Reinhold, 1991.
11. J. Knocke, Post-Construction Liability and Insurance, The National Swedish Institute of Building Research, E&FN Spon, 1993.
12. WHR不動産PLリスク研究班,建設・不動産業のPL責任がよくわかる本, (株)中經出版, 1997.
13. 森幹芳, PL法とISO9000シリーズ(建設産業を中心として), 月刊建築仕上技術, 1995.
14. 内田京治, 建材業界とPL対策, 月刊建築仕上技術, 1995.
15. 内田京治, PL法と住宅トラブル, 三一書房, 1995.